

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

目 次

要 約	1
I. 序 論	4
1. 최저임금제의 의의	4
2. 최저임금제의 내용	5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6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7
5. 생계비 산출경위	8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出概要	10
1. 생계비의 정의	10
2. 생계비의 구조	13
3. 생계비 산출개요	14
III. 1998年 10月 生計費 算出過程	20
1. 소비지출	20
2. 비소비지출	31
IV. 要約 및 結論	35
1. 본 연구의 개선사항	35
2. 연령별 생계비 추계(18세)	36
3. 향후 연구과제	38
參考文獻	40
附 表	43

表 目 次

〈표 I-1〉 최저임금 적용대상 관련 주요지표 추이	6
〈표 I-2〉 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지표 추이	7
〈표 I-3〉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	8
〈표 II-1〉 생계비의 구조	13
〈표 II-2〉 생계비와 가구 구성	14
〈표 III-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1997년 4/4분기~ 1998년 3/4분기)	22
〈표 III-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1997년 4/4분기~ 1998년 3/4분기)	23
〈표 III-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24
〈표 III-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1997년 4/4분기~ 1998년 3/4분기)	25
〈표 III-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1997년 4/4분기~ 1998년 3/4분기)	25
〈표 III-6〉 1인가구 순식료품비(1998년 10월)	27
〈표 III-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8년 10월)	29
〈표 III-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1998년 10월)	29
〈표 III-9〉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1998년 10월)	31
〈표 III-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1998년 10월)	34
〈표 IV-1〉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1998년 10월)	38

〈要約〉

1. 산출개요

가. 소비지출

- 식료품비 :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방식
 - 각년도 10월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 각년도 10월의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권장영양량(2,600kcal)을 기준으로 작성된 식료품 모형의 품목에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비식료품비 : 환산승수(multiplier) 방식
 - 「도시가계조사」의 각년도 10월 비목별 평균 지출액(일수 및 가구규모 조정)에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함.

나. 비소비지출 :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

-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함.
- 조세 :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됨.
 - 근로소득세 :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산출함.
 - 주민세(소득할) : 근로소득세의 10.0%로 산출함.

- 사회보험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됨.
 - 의료보험 보험료 : 근로소득의 1.5%로 산출함.
 -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소득의 3.0%로 산출함.
 - 고용보험 보험료 : 임금총액의 0.3%로 산출함.

다.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 연령계층별 소비지출 조정계수 0.8을 적용함.
 - 소비지출 생계비 : 1인가구 소비지출 생계비에 연령조정계수 0.8을 곱하여 산출함.
 - 비소비지출 생계비 : 관계법령에 따른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함.

2. 산출결과

가.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 1998년 10월 기준 생계비는 419,977원/월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된 전년도 393,983원/월에 비하여 6.6% 증가함.
-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5.4%)보다 비소비지출(35.8%) 증가율이 높음.

나. 최저임금(시급)

-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1,858원/시간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된 전년도 1,743원/시간에 비하여 6.6% 증가함.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추이〉

	1996년 10월	1997년 10월	1998년 10월
소비지출	350,523	378,414 (7.96)	398,831 (5.40)
식료품	115,624	124,322 (7.52)	135,197 (8.75)
주거	90,708	110,770 (22.12)	108,664 (-1.90)
광열수도	12,497	14,745 (17.99)	13,984 (-5.17)
가구집기	9,895	7,708 (-22.10)	6,438 (-16.47)
피복신발	19,944	17,563 (-11.94)	15,136 (-13.82)
보건의료	18,547	14,735 (-20.55)	10,433 (-29.20)
교육교양	9,034	10,634 (17.71)	9,167 (-13.79)
교통통신	20,596	26,136 (26.90)	41,576 (59.07)
기타소비	53,677	51,800 (-3.50)	58,237 (12.43)
비소비지출	14,264	15,569 (9.15)	21,146 (35.82)
조세	0	0 (-)	0 (-)
소득세	0	0 (-)	0 (-)
주민세	0	0 (-)	0 (-)
사회보험	14,264	15,569 (9.15)	21,146 (35.82)
의료보험	5,550	6,150 (10.81)	6,450 (4.88)
고용보험	1,314	1,419 (7.96)	1,496 (5.40)
국민연금	7,400	8,000 (8.11)	13,200 (65.00)
생계비	364,787	393,983 (8.00)	419,977 (6.60)

I. 序 論

본 연구는 1999. 9. 1.~2000. 8. 31.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산출된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이다.¹⁾ 본 연구원은 매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연구하여 그 산출과정 및 산출결과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1999년 3월 17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적용범위(시행령 제2조)가 이전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경제적 고려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도가 있었다.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927호로 제정· 공포되고,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1)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통계청 사회통계과 유수덕, 한국개발연구원 이희숙씨에게 감사드린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①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②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 ③ 기업의 공정한 경쟁촉진과 경영합리화 도모 등이 있다.²⁾

2. 최저임금제의 내용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그 동안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특히 1999년 9월 이후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규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등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1988년에서 1993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8월 15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994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적용시기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적용시기 변경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교섭 또는 임금체계에 과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변화는 <표 I-1>에 나타나 있다. 비록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 즉 영향률은 1989년 10.7%를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8년에는 0.4%에 그치고 있다.

2)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배무기(1998, pp.251~260) 참조.

〈표 I-1〉 최저임금 적용대상 관련 주요지표 추이

적용기간	적용대상(법)		적용근로자 (명)	수혜근로자 (명)	영향률 (%)
	규 모	산 업			
88. 1~88.12	10인 이상	제 조 업	2,266,675	94,410	4.2
89. 1~89.12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2,555	327,954	10.7
90. 1~90.12	10인 이상	전 산 업	4,386,041	187,405	4.3
91. 1~91.12	10인 이상	전 산 업	4,556,075	393,183	8.6
92. 1~92.12	10인 이상	전 산 업	4,620,164	391,502	8.5
93. 1~93.12	10인 이상	전 산 업	5,045,064	227,519	4.5
94. 1~94. 8	10인 이상	전 산 업	4,916,322	102,312	2.1
94. 9~95. 8	10인 이상	전 산 업	4,863,923	103,033	2.1
95. 9~96. 8	10인 이상	전 산 업	5,380,697	103,191	1.9
96. 9~97. 8	10인 이상	전 산 업	5,240,135	127,353	2.4
97. 9~98. 8	10인 이상	전 산 업	5,324,834	123,513	2.3
98. 9~99. 8	10인 이상	전 산 업	5,136,061	22,980	0.4
99. 9~2000. 8	5인 이상	전 산 업	-	-	-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년도.

3.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

지난 10여년간 최저임금 수준 및 증가율과 관련된 주요 지표는 〈표 I-2〉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에 근접하고 있는 정액급여 증가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다. 따라서 정액급여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율은 1989년 37.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7년에는 정액급여의 32.0%에 그치고 있다.³⁾ 특히 1998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7.5%에도 미치지 않은 2.7%에 그쳐 최저임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0.4%로 낮아졌다.

3)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약 40~50%이다. 이에 대해서는 Ehrenberg & Smith(1994: 80) 참조.

〈표 1-2〉 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원, %)

적용기간	최 저 임 금		월환산 시 간	최저/정액 급여 비율	증 가 율		
	시 급	월 급			최저임금	정액급여	물가(CPI)
88. 1~88.12	462.5	111,000	240	35.1			
	487.5	117,000		37.0			
89. 1~89.12	600.0	141,000	240	37.6	6.6	18.6	5.7
90. 1~90.12	690.0	155,940	240	35.1	15.0	18.4	8.5
91. 1~91.12	820.0	185,320	235	35.5	18.8	17.6	9.3
92. 1~92.12	925.0	209,050	226	35.0	12.8	14.3	6.3
93. 1~93.12	1,005.0	227,130	226	33.9	8.6	12.3	4.8
94. 1~94. 8	1,085.0	245,210	226	32.9	8.0	11.4	6.2
94. 9~95. 8	1,170.0	264,420	226	31.9	7.8	10.9	4.5
95. 9~96. 8	1,275.0	288,150	226	31.2	9.0	11.7	4.9
96. 9~97. 8	1,400.0	316,400	226	31.3	9.8	9.4	4.5
97. 9~98. 8	1,485.0	335,610	226	32.0	6.1	3.7	7.5
98. 9~99. 8	1,525.0	344,650	226		2.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4. 생계비 종류와 실태조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법 제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근로자의 생계비가 다른 기준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생계비의 종류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우선 생계비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규정되는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출한 비용 또는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실태생계비 또는 이론생계비로 정의된다. 그런데 특히 이론생계비는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이론생계비가 도출된다.⁴⁾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유경준(1998: 4~5)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또는 설정된 생활모형에 따라 산출하고 있는 도시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실태조사를 작성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3>과 같다. 이를 생계비의 산정방식에 따라 세분한다면 통계청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는 실태생계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에 각각 해당된다.

<표 I-3> 우리나라 생계비 실태조사

작성기관	조사명칭	조사(산출) 주기	조사(산출) 대상기간	표본의 크기	비 고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매월	매월	약 5,000가구	2인 이상 가구
	가구소비실태조사	매 5년	10~11월	약 30,000가구	1인가구 포함
최임심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매년	10월	약 2,000가구	1인가구만
한국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	매년	10월		표준가구 전체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매년	10월		표준가구 전체
KLI	최임심 생계비	매년	4/4분기~3/4분기		표준가구 전체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 즉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인가구의 생계비를 회귀분석 또는 환산승수 방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실태생계비인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생계비 산출경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계비의 종류 및 실태조사는 다양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서 다른 어떤 자료들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1987년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원의 표준생계비 산정방식에 근거하고 있었는데⁵⁾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노·사·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회의가 1988년 5월 3일~7월 25일에 6차례 개최되었으며, 실무회의에서 표준생계비를 최빈값 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⁶⁾ 따라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전문위원회에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1989년까지 제출되었다. 그러나 매년 상이한 기준에 따른 다수의 생계비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생계비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9년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생계비 단일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실무소위에서는 1990년 2월 2일에 생계비 산출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 방식, 산출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생계비 명칭은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라 하고 또한 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⁷⁾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1990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를 현재까지 산출하고 있다.⁸⁾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raw data) 이용상의 제약 등으로 생계비 산출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출하고 있는 생계비의 산출과정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가구규모별로 소비지출액 최빈값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 즉 조정계수로 조정하여 비목별·가구원수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생계비」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이후에는 「표준」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키고 본 연구원 생계비 연구의 제목을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 연구」로 하고 있다.

5)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인사원 표준생계비 추정방식을 약간 변형한 모형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일본 인사원의 표준생계비는 이전과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

6)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a: 14~15) 참조.

7) 1989년에도 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 박영범·조우현(1989)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8) 그 동안의 연구결과는 박영범(1990), 강순희(1995), 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 등 참조.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出概要

1. 생계비의 정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근로자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계지출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적인 생활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생계비의 산출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 즉 1인 취업 근로자 가구의 최빈값 계층의 가계지출액으로 산출된다.

지난 1988년 5~7월에 개최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생계비의 산출모형 설정을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계층을 최빈값 계층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소비지출액 최빈값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인 조정계수로 조정하여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생계비는 최빈값 계층의 최저생계비로서 이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하에서는 생계비 산출모형을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이유와 최빈값 계층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가. 생계비의 분포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생계비 등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라고 있다고 가정된다.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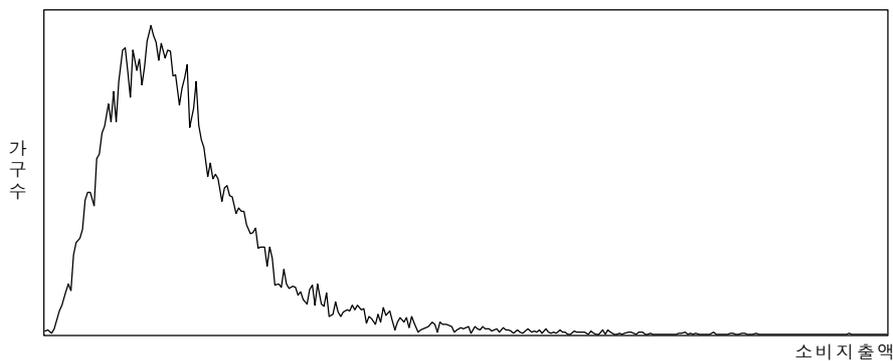
9) 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a: 14) 참조.

약 양의 확률변수(예컨대, 임금이나 생계비 등)에 로그(log)를 취한 새로운 확률변수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한다면 원래의 확률변수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분포의 대표값으로 평균값(mean) 이외에도 중위값(median)이나 최빈값(mode)이 있다.

확률밀도함수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로그정규분포하는 임금이나 생계비 등의 대표값으로는 평균값보다 최빈값이 보다 적합하다. 이는 평균값이 최고값이나 최저값 등 극단의 수치들(outliers)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최빈값은 이들 수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¹⁰⁾ 즉 최빈값은 평균값보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분포의 대표값으로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한다. 실제로 분석자료인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생계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지출액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며 또한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의 관계도 성립하고 있다.

[그림 II-1] 소비지출의 확률밀도함수



주: 1) 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1인 취업 근로자 가구.
 2) 최빈값 1,183,730원, 중위값 1,375,460원, 평균값 1,591,837원.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0)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17) 참조.

나. 최빈값 계층의 설정

그러나 최빈값은 특정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다. 생계비 연구에서는 최빈값 계층을 최빈값 $\pm 1/2$ 표준편차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다.¹¹⁾

우선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의 최빈값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x 를 양의 확률변수, 새로운 확률변수 y 를 $y = \log x$ 라고 하자. 만약 y 가 정규분포한다면 x 는 로그정규분포한다. 로그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식(2-1) 그리고 평균 및 분산은 식(2-2)로 나타난다.¹²⁾

$$f(x; \mu, \sigma^2)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x - \mu)^2\right] \dots\dots\dots(2-1)$$

$$\text{단, } 0 < x < \infty, -\infty < \mu < \infty, \sigma > 0$$

$$E(\log x) = \mu, \text{Var}(\log x) = \sigma^2 \dots\dots\dots(2-2)$$

확률변수 x 의 분포에 관한 최빈값(mode), 즉 m 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cdot)$ 를 최대화시키는 x 값이다.¹³⁾ 즉 $\frac{df(\cdot)}{dx} = 0$ 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최빈값 m 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frac{df(\cdot)}{dx} = 0 \Leftrightarrow \frac{-1}{x^2\sqrt{2\pi\sigma}} \exp[\cdot] \left\{ 1 + \frac{1}{\sigma^2}[\log x - \mu] \right\} = 0 \dots\dots\dots(2-3)$$

$$\log x = \mu - \sigma^2 \Leftrightarrow x = \exp[\mu - \sigma^2] \dots\dots\dots(2-4)$$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를 최대화시키는 x 값, 즉 $m = \exp[\mu - \sigma^2]$ 이다.

11)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35) 참조.

12) Mood, A. M., Graybill, F. A. & Boes, D. C.(1974: 117) 참조.

13) 김재주·이재창·김용구(1995: 32) 참조.

다음으로 로그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의 표준편차를 δ 라고 하면 최빈값 계층은 $m \pm \frac{1}{2} \delta$ 로 된다.¹⁴⁾

본 연구에서 x 에 해당하는 변수는 구체적으로 소비지출액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에서 소비지출액은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순수한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을 포함하고 있다.

2. 생계비의 구조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대별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그리고 비식료품비는 다시 8개의 비목으로 세분된다.¹⁵⁾

따라서 생계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 ⑤ 피복·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교양, ⑧ 교통·통신, ⑨ 기타

〈표 II-1〉 생계비의 구조

생계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kcal기준(1995년 개정)
		주거	월세, 주택설비 및 수리비, 기타(전세 및 자가평가액 포함)
		광열·수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
		가구·집기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가사서비스 등
		피복·신발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신발 등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타 소비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소득할)
		사회보험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14) 기존 연구에서는 최빈값의 도출에 대한 증명이나 최빈값 계층의 설정에 대한 수식 표현이 부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15)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를 단순히 생계비라고 표현한다.

소비지출, ⑩ 비소비지출 등 전체 10개가 되고, 각각의 비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표 II-1>에 나타나 있다.¹⁶⁾

그런데 가구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가계지출의 비목별 구성이나 전체 지출액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생계비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원 중 가구주 1인만 취업하고 있는 1인 취업 근로자 가구를 표준가구로 선정한다. 이 표준가구도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 등으로 세분된다.

이와 같이 표준가구를 가구규모에 따라 세분하고 비목별로 생계비를 산출하며 이를 가구규모별로 합산하여 가구규모별 생계비를 산출한다. 이러한 생계비의 비목별 산출방법 및 산출대상으로 간주되는 표준가구는 <표 II-2>에 나타나 있다.

<표 II-2> 생계비와 가구 구성

생 계 비	생계비의 산정방법	식료품비 비식료품비	마켓·바스켓 방식 환산승수(multiple) 방식
	산정대상 가구 구성 (표준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독신남자(18세 정도) 부부(1인 취업) 부부와 자녀 1인(1인 취업) 부부와 자녀 2인(1인 취업) 부부와 자녀 3인(1인 취업)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보고서』, 1988, 19쪽.

3. 생계비 산출개요

비록 생계비는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계비의 산출방법은 식료품, 식료품 이외, 비소비지출 등 비목별로 상이하다. 생계비 산출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1995년 이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비지출 대분류 중 이전의 교육·교양오락을 교육, 교양·오락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을 9개로 대분류한다.

우선 식료품비는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료품 품목을 선정하고, 즉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에 선정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식료품 이외의 비식료품비는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을 추정하여 산출된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산출한다. 끝으로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본 연구의 개선사항

본 연구는 생계비 산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한다. 산출시점의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기관들, 예컨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생계비 산출시점은 10월이다.¹⁷⁾ 그러나 지난 3년간 연구에서 생계비 산출시점은 식료품비는 12월,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이 비목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생계비와 산출시점이 상이하여 생계비의 직접적인 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②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식료품 이외 비목의 생계비 산출시점과 생계비 환산승수 추정기간이 동일하다면,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생계비를 산출할 필요성이 약화된다.¹⁸⁾

둘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환산승수를 지난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하게 되면, 가구규모별 생계비 격차의 매년 변화가 환산승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17) 이 밖에도 1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1991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도 조사대상기간을 10~11월로 하고 있다.

18) 이는 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에서 식료품 이외의 비목별 생계비 산출이 <표 III-4>로 종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비소비지출은 1988년 8월 12일 개최된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¹⁹⁾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편한다. ① 기존의 연구에서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를 생계비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물세'가 소비지출 중 가구·집기 비목의 '쓰레기봉투료'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조세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한다.

넷째,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조사 가격월보」를 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자료상의 제약으로 민간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1998년 3월 이후 품목별 소비자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끝으로,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함에 따라 식료품 이외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도 식료품비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일수, 즉 365/12로 조정하여 산출한다.²⁰⁾

나. 생계비 산출개요

이제 생계비 산출과정을 본 연구에서의 개선사항을 고려하면서 비목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식료품비

각년도 10월 기준 식료품 이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각년도 10월의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지난 1년간(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1998년 10월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생계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에 조사된 1인 취

19)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a: 84) 참조.

20) 이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53) 참조. 참고로 일본 인사의원의 표준생계비도 각년도 4월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을 일수로 조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무행정연구소(1996: 32) 참조.

업 2~6인 (근로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한다. 이를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으로 나누어 4인가구 기준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한다.

둘째, 「도시가계조사」의 1998년 10월에 조사된 1인 취업 전체 (근로자) 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을 월평균 일수로 조정하고, 이를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가구규모 조정계수를 곱하여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를 산출한다.

셋째, 1998년 10월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앞서 산출된 4인가구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식료품비²¹⁾

각년도 10월 기준 가구규모별 식료품 생계비는 각년도 10월의 1인가구 식료품비에 지난 1년간(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 식료품비의 가구규모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1998년 10월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식료품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에 조사된 1인 취업 2~6인 (근로자)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료품비의 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한다. 그러나 식료품 이외의 비목과는 달리 1인 이외 가구의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를 1인가구의 식료품비 최빈값 추정치로 나누어 1인가구 기준 식료품비의 가구규모별 환산승수를 산출한다.

둘째, 지난 1995년 한국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가 설정한 순식료품 식단에 1998년 10월 해당 식료품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1인가구 순식료

21) 참고로 일본 인사는 1991년 이후 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비목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켓·바스켓 방식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선호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행정연구소(1996: 32) 참조.

품비를 산출하고, 이를 식료품비의 20%로 가정된 외식비를 합산하여 전체 식료품비를 산출한다.²²⁾

셋째, 1998년 10월의 가구규모별 식료품비는 앞서 산출된 1인가구 식료품비에 식료품 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은 법적으로 강요된 의무적 지출로서 조세,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기타 비소비지출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은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최근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만으로 구성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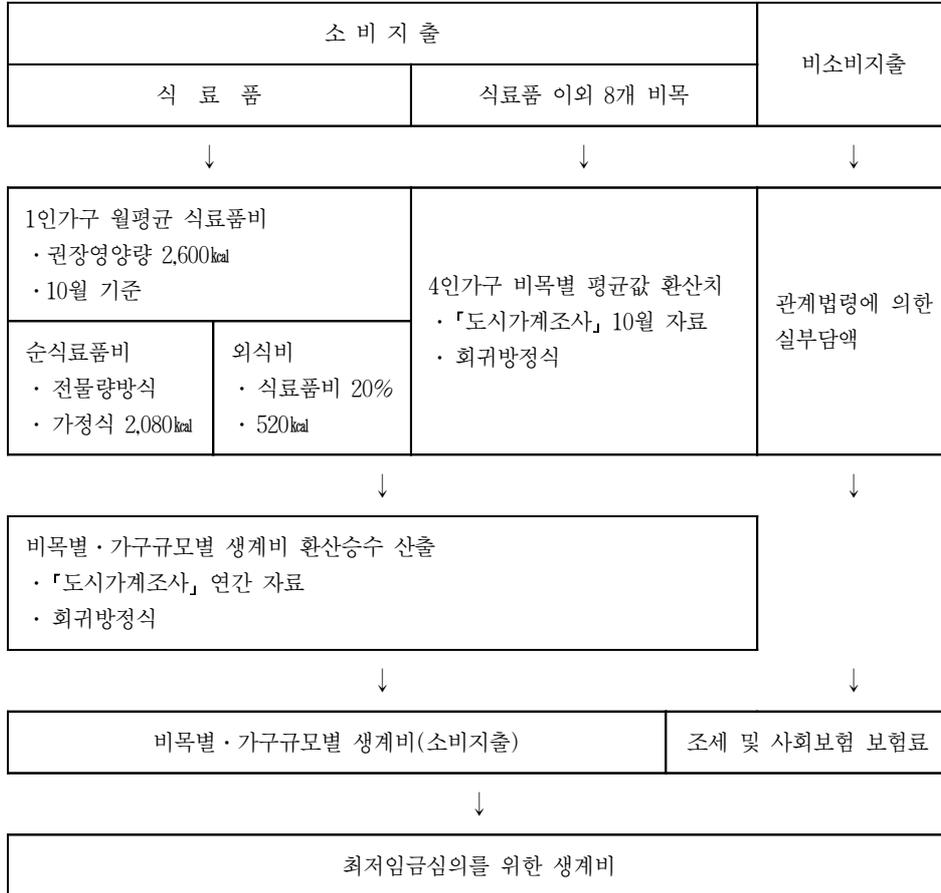
첫째,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되는데 이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둘째, 사회보험료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해당 사회보험 법규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방법은 [그림 II-2]에 요약되어 있다.

22) 1인가구 식료품비 산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경준(1998: 22~25) 참조.

(그림 Ⅱ-2)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과정



Ⅲ. 1998年 10月 生計費 算出過程

1.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대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 및 교양·오락을 1개의 비목, 즉 교육·교양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분류된 9개의 소비지출 비목은 다시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대별한다. 이는 소비지출과 관련된 생계비의 산출과정이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의 비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식료품비는 전물량(market-basket)방식에 따라 1인가구의 식료품비를 산출하고, 1인 이외 가구의 식료품비는 1인가구의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식료품 이외의 8개 비목별 생계비는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값 환산치에 식료품 이외 가구규모별·비목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승수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지만, 특히 가구원수 차이에 기인한 생계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가 계산된다. 생계비 환산승수는 4인가구의 소비지출 평균값에 1인 이외 가구의 소비지출 최빈값(추정치)의 비율로서 정의된다.²³⁾ 그런

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료품비는 이외는 달리 1인가구 최빈값 추정치에 대비한 1인 이외 가구의 최빈값 추정치로 정의된다.

데 일반적으로 최빈값은 평균값보다 작기 때문에 생계비 환산승수는 1보다 작게 된다.

한편 환산승수는 가구규모별 생계비로부터 산출되지만, 역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설정된 4인가구의 생계비에 대응한 4인 이외 가구의 생계비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²⁴⁾

이러한 생계비 환산승수는 비목(i)별·가구규모(j)별로 식(3-1)과 같이 정의되며,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시자료(raw data)를 이용한다.²⁵⁾

$$\text{비목}(i)\text{별} \cdot \text{가구규모}(j)\text{별 생계비 환산승수} = \frac{j\text{인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4\text{인가구 } i\text{비목 평균값}} \dots\dots\dots (3-1)$$

2)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 산출

우선 1998년도(1997년도 4/4분기~1998년도 3/4분기)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보고서」의 주거비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① 월세, ② 주택설비 및 수선비, ③ 기타 주거비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주거비에는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지만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 기회비용, 즉 자가평가액,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가구도 자산의 감소, 즉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형태로 주거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협의의 주거비에 귀속임료를 포함시킨 광의의 주거비를 산출한다.²⁶⁾ 그러나

24) 노무행정연구소(1987: 35) 참조.

25)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이 참석한 1995년 12월 간담회에서 연간 자료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26) 만약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구규모가 작은 월세 가구의 주거비가 가구규모가 큰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귀속임료를 포함하지 않는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에 비하여 과

점유형태가 무상주택이나 사택인 가구의 자가평가액은 주거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각종 귀속임료 자료의 이상치(outlier)를 시정하여 주거비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지출 비목에 대하여 4인 가구를 포함한 2~6인가구의 비목별 평균 지출액을 산출한 결과가 <표 III-1>에 나타나 있다.²⁷⁾

<표 III-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단위 :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944,238	1,147,261	1,315,252	1,501,586	1,680,434
식료품	260,669	314,291	370,262	406,052	446,113
순주거	48,008	49,807	41,646	43,949	39,236
광열수도	58,324	68,590	74,904	89,792	103,609
가구집기	40,509	48,747	46,682	58,072	34,180
피복신발	58,284	62,325	69,468	81,014	91,820
보건의료	62,767	62,221	60,980	66,612	82,718
교육교양	65,453	136,987	247,892	318,071	383,591
교통통신	130,797	175,549	171,723	194,783	213,126
기타소비	219,427	228,743	231,695	243,241	286,040
총소비지출	1,297,720	1,543,407	1,768,209	1,991,738	2,083,978
총주거	401,490	445,954	494,603	534,101	442,779

주 :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3)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식(3-1), 즉 생계비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산출하여 보자. 이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소 평가되기도 한다.

27) 이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주거비는 총주거비이고, 소비지출액은 총소비지출액을 지칭한다.

가) 제1단계 : 가구규모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소비지출액의 가구규모별 최빈값 계층은 소비지출 최빈값에 소비지출 표준편차의 1/2을 전후한 구간으로 설정된다. 즉 소비지출 최빈값을 m , 소비지출 표준편차를 δ 라고 하면 최빈값 계층은 $m \pm \frac{1}{2} \delta$ 로 설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가구규모별로 산출한 소비지출 최빈값 m_j 과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평균값 \bar{u}_j 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규모별 조정계수가 필요하다. 가구규모별 조정계수는 m_j / \bar{u}_j 로서 정의된다.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액에 해당 가구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서 이용되는 자료가 된다.²⁸⁾

[그림 II-1]에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평균값은 전체 가구의 비목별 평균값보다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가구와 최빈값 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평균값을 가구규모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III-2>에 나타나 있다.

<표 III-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 가구(A)	최빈값 계층 가구(B)	비율(=B/A)
2인가구	1,297,720	893,078	0.6882
3인가구	1,543,407	1,083,624	0.7021
4인가구	1,768,209	1,287,506	0.7281
5인가구	1,991,738	1,415,736	0.7108
6인가구	2,083,978	1,506,871	0.7231

나) 제2단계 :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서 이용하는 「도시가계조사」에서는 1인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비목별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6인가구 최빈값 계층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

28)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35~36) 참조.

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1인 이외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도 소비지출 Y 와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 X 간에 비목별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²⁹⁾

$$Y = a_2X^2 + a_1X + \varepsilon \dots\dots\dots(3-2)$$

이와 같이 소비지출 비목별로 식(3-2)을 추정한 결과는 <표 III-3>에 나타나 있다.³⁰⁾

<표 III-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8,710	108,538	0.8611
주거	-18,189	163,603	0.8100
광열수도	-2,265	26,077	0.6016
가구집기	-762	9,968	0.2435
피복신발	-1,427	17,150	0.3813
보건의료	-1,389	16,086	0.2194
교육교양	4,174	12,701	0.5036
교통통신	-4,722	48,970	0.6342
기타소비	-6,933	69,507	0.6579

다) 제3단계 :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 산출

이전 단계에서 추정한 비목별 가구원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된 수치는 식(3-1), 즉

29) 비록 상수항 및 가구원수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소비지출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가구원수가 0, 즉 가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비지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체감한다고 가정하여 상수항이 없고 가구원수는 2차항까지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을 설정한다.

30) 회귀분석에서는 2~6인가구의 자료가 이용된다. 실제로 7인 이상 가구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아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1998년도의 경우 7인 이상 가구는 연간 95가구에 이들 가구가 매월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표본의 크기는 8가구에 불과하다.

〈표 III-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99,828	182,236	247,225	294,793	324,941
주거	145,413	254,448	327,104	363,382	363,281
광열수도	23,811	43,092	57,842	68,061	73,749
가구집기	9,206	16,887	23,045	27,678	30,788
피복신발	15,723	28,591	38,605	45,764	50,069
보건의료	14,697	26,616	35,757	42,119	45,704
교육교양	16,876	42,100	75,672	117,593	167,863
교통통신	44,248	79,051	104,410	120,324	126,792
기타소비	62,574	111,283	146,126	167,104	174,217

생계비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며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는 〈표 III-4〉에 나타나 있다.

4)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의 산출

이제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표 III-4〉 및 〈표 III-1〉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생계비 환산승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표 III-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1997년 4/4분기~1998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0.270	0.492	0.668	0.796	0.878
주거	0.294	0.514	0.661	0.735	0.734
광열수도	0.318	0.575	0.772	0.909	0.985
가구집기	0.197	0.362	0.494	0.593	0.660
피복신발	0.226	0.412	0.556	0.659	0.721
보건의료	0.241	0.436	0.586	0.691	0.749
교육교양	0.068	0.170	0.305	0.474	0.677
교통통신	0.258	0.460	0.608	0.701	0.738
기타소비	0.270	0.480	0.631	0.721	0.752

예컨대 2인가구 광열수도비 환산승수는 2인가구 광열수도비 최빈값 추정치 43,092원을 4인가구 광열수도비 평균값 74,904원으로 나눈 0.575로 산출된다.

나. 1인가구 식료품비³¹⁾

식료품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식료품비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국민의 식생활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식료품비의 산출은 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식료품비의 산정대상은 이전과 같이 중등 활동에 종사하는 18세 남자 성인 근로자이며,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영양소는 에너지(cal)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기존의 민간기관 자료를 상당 부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자료로 대체한다. 그 동안 식료품비 산출과정에서 이용된 민간기관의 물가자료는 조사대상기간이 매월 상순이거나, 소비자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71개 품목 중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를 이용하여 식료품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의 물가자료, 그리고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시장조사에 근거하여 식료품비를 산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출시점인 1998년 10월의 1인가구 1일 순식료품비는 <표 III-6>에 나타나 있다.

31) 1인가구의 식료품비 산출을 위한 식료품 구성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김초일 박사의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부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III-6〉 1인가구 순식품비(1998년 10월)

(단위 : 원)

	품 목	소비자가격		품 목	소비자가격
곡 류	쌀	637.3	채소·해초	표고버섯	9.6
	보리쌀	9.2		양송이버섯	6.7
	콩	31.9		느타리버섯	19.4
	팥	5.5		풋고추	37.4
	현미	12.2		김	80.0
	밀가루	3.5		미역	68.8
육 류	쇠고기	273.5	다시마	1.6	
	돼지고기	227.2	배추김치	384.0	
	닭고기	37.2	각두기	108.0	
	내장 등(곱창)	11.4	과 실	사과	136.6
	햄	45.8		배	20.2
유 란	달걀	58.3		감	21.0
	두부	63.6		포도	23.2
	우유	267.0		복숭아	36.0
어 개 류	조기	258.0	밀감	90.7	
	명태	84.8	수박	99.8	
	고등어	59.7	참외	21.0	
	갈치	103.7	유지·조미료	참기름	13.7
	냉동오징어	66.1		콩기름	48.0
	마른멸치	116.7		옥수수기름	5.5
	참치통조림	40.1		설탕	6.6
	게맛살	74.1		마늘	72.0
채소·해초	무	28.0		소금	2.0
	열무	56.0		참깨	46.0
	배추	11.4		밤	9.1
	양배추	6.4	고추장	28.4	
	파	28.9	간장	14.7	
	양파	28.8	된장	20.1	
	시금치	69.9	빵 및 과자	식빵	51.3
	콩나물	40.0		국수	37.2
	상추	21.8		라면	32.7
	당근	33.2		땅콩	12.6
	오이	23.5		콜라	71.7
	호박	12.8		유산균발효유	50.8
	감자	61.0		아이스크림	24.2
	고구마	25.2		전체(2,164 kcal 기준)	4637.0

주 : 소비자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를 단순 평균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1998. 10.
 한국물가협회, 『월간 물가자료』, 1998. 10.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월간 유통물가』, 1998. 10.
 한국노동연구원 자체 시장조사 등.

한편 월평균 식료품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1일 순식료품비란 권장영양량 2,600kcal의 80%를 충족하는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³²⁾ 따라서 1인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는 월평균일수 365/12일, 식료품비 중 외식비의 비중 20%을 고려하여 산출된다.³³⁾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3-3)과 같다.

$$\text{월평균 식료품비} = \text{1일 순식료품비} \times \frac{365}{12} \times \frac{10}{8} \dots\dots\dots(3-3)$$

다. 4인가구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

앞에서 산출된 지난 1년간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에 각년도 10월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곱하면 각년도 10월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가 산출된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인 각년도 10월의 4인가구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들 수치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각년도 10월 전체 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및 평균 가구원수를 산출한다.³⁴⁾ 다음으로 각년도 10월 자료를 이용하여 2~6인가구에 대한 식료품 이외 지출액을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비목별로 식(3-4)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식(3-4)의 추정결과는 <표 III-7>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표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평균 가구원수 가구 및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을 추정한다. 특히 4인가구 지출액 추정치 Y_4 를 평균 가구원수 가구 지출액 추정치 Y_A 로 나눈 수치를 '가구원수 조정계수'라고 한다. 끝으

32) 1인가구 1일 순식료품비는 <표 III-6>에서는 2,164kcal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권장영양량 2,600kcal의 80%에 해당하는 2,080kcal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33) 실제로 외식비 비중에 대한 가정은 월평균 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1인가구 월평균 식료품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각년도 10월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도 월평균 일수 365/12로 조정한다.

로 앞서 산출한 전체가구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에 가구원수 조정계수를 곱하면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가 산출된다.

$$Y = \beta_2 X^2 + \beta_1 X + \epsilon \dots\dots\dots(3-4)$$

예컨대 1998년 10월 평균 가구원수는 3.48인이고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51,885원이다. 4인가구 월평균 광열수도비 환산치는 4인가구의 광열수도비 추정치 57,898원을 3.48인 가구의 광열수도비 추정치 54,633원으로 나눈 ‘가구규모 조정계수’ 1.0598을 월평균 주거비 51,885원에 곱하면 54,986원으로 산출된다.

〈표 III-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8년 10월)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 료 품	-16,205	170,707	0.8087
주 거	-29,025	240,380	0.7108
광열수도	-2,337	23,823	0.6103
가구집기	-2,847	22,420	0.0626
피복신발	-3,380	35,372	0.2725
보건의료	-5,072	34,912	0.2045
교육교양	4,042	26,031	0.4129
교통통신	-8,757	88,850	0.0977
기타소비	-17,808	143,681	0.5779

〈표 III-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1998년 10월)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추정치 (Y ₄)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_A)	4인가구 평균값 환산 치(Y×Y ₄ ÷Y _A)
식 료 품	377,449	423,540	398,052	401,619
주 거	450,912	497,116	485,178	462,007
광열수도	51,885	57,898	54,633	54,986
가구집기	40,283	44,119	43,548	40,812
피복신발	78,624	87,411	82,214	83,594
보건의료	55,560	58,502	60,073	54,108
교육교양	139,377	168,805	139,776	168,324
교통통신	190,425	215,296	203,272	201,689
기타소비	264,555	289,793	284,430	269,543

라.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출시점인 1998년 10월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표 III-5>의 생계비 환산승수에 <표 III-8>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를 곱하면 산출된다. 그런데 식료품과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다.

1) 식료품비

산출시점인 1988년 10월의 1인 이외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는 앞에서 산출된 1인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에 가구규모별 식료품비 환산승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는 식(3-5)에 나타나 있다.

$$j\text{인가구 식료품비} = 1\text{인가구 식료품비} \times \frac{j\text{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1\text{인가구 식료품비 환산승수}} \dots\dots\dots(3-5)$$

2) 식료품 이외 비목별 지출

산출시점인 1988년 10월의 식료품 이외의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는 <표 III-8>의 4인가구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에 <표 III-5>의 생계비 환산승수를 곱하면 산출된다. 이는 식(3-6)에 나타나 있다

$$j\text{인가구 } i\text{비목 생계비} = 4\text{인가구 } i\text{비목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 \\ \times j\text{인가구 } i\text{비목 생계비 환산승수} \dots\dots\dots(3-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1998년 10월의 소비지출 관련 생계비는 <표 III-9>에 나타나 있다.

〈표 Ⅲ-9〉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1998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68,996	308,502	418,518	499,045	550,082
주거	135,830	237,679	305,547	339,434	339,340
광열수도	17,479	31,633	42,461	49,962	54,138
가구집기	8,048	14,764	20,147	24,198	26,917
피복신발	18,920	34,405	46,455	55,070	60,250
보건의료	13,041	23,616	31,727	37,373	40,553
교육교양	11,459	28,587	51,383	79,848	113,982
교통통신	51,969	92,846	122,629	141,320	148,918
기타소비	72,796	129,462	169,997	194,402	202,676

2. 비소비지출

본 연구에서 비소비지출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된다. 이는 1988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생계비에 포함되는 비소비지출 항목으로 법적으로 강요된 의무적 지출만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는 더 이상 비소비지출 생계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물세'가 소비지출 중 가구·집기 비목의 '쓰레기봉투료'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조 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 구성된다.³⁵⁾

35) 1990년 12월 31일 방위세의 폐지로 조세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로만 구성된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축률을 근로소득의 20%로 가정하고, 앞서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에 저축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추정한다.³⁶⁾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정된 연간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인적 공제액, 특별 공제액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12로 나누어 근로소득세(월할분)을 산출한다.

2) 주민세(소득할)

주민세(소득할)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산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1998년의 조세 산출방식은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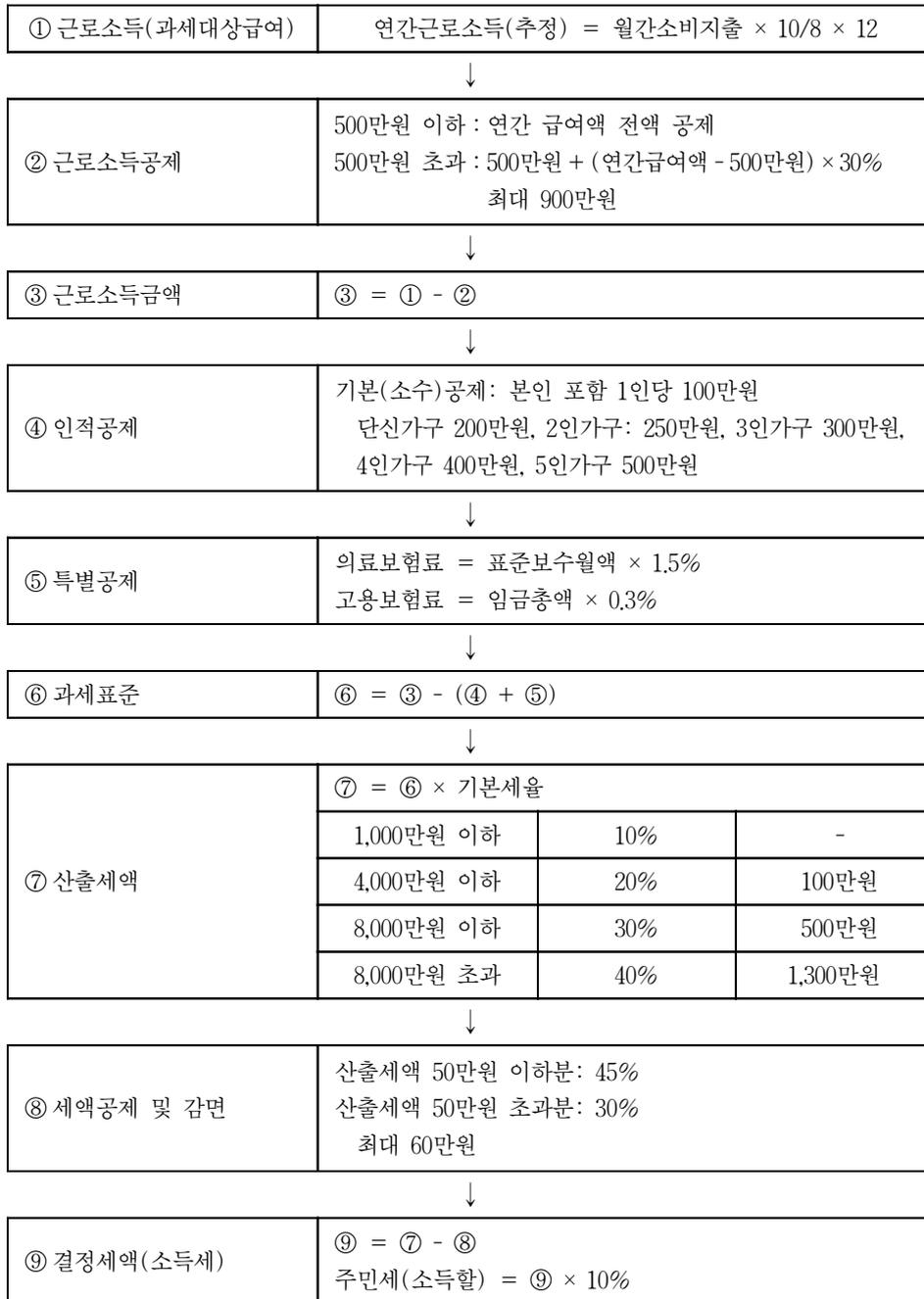
나. 사회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런데 각종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수월액 또는 임금총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추정근로소득의 85%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추정근로소득으로 가정한다.

36)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축액을 생계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액(조세 및 사회보험료)을 산출하려면 저축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20%로 가정한다. 즉 소비지출액의 25%를 저축액으로 가정한다.

(그림 Ⅲ-1) 조세 추정방식(1998)



자료 : 국세청,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1998.

1) 의료보험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보험료는 비록 개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보수월액의 약 1.5%이다. 1998년 현재 보수월액 계층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는 <부표 1-2>에 나타나 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현재 표준보수월액의 3.0%로 그 이전의 2.0%에서 크게 인상되었다. 그리고 1999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또다시 표준보수월액의 4.5%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현재 보수월액 계층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는 <부표 1-3>에 나타나 있다.

3) 고용보험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1998년 현재 임금총액의 0.3%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고용보험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5%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내역은 <표 III-10>에 나타나 있다. 특히 조세보다 사회보험 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비소비지출 생계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199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III-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1998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498,539	901,493	1,208,865	1,420,652	1,536,856
비 소 비 지 출	25,570	63,445	85,846	100,736	110,351
조 세	0	15,814	23,113	28,809	30,788
소 득 세	0	14,376	21,012	26,190	27,989
주 민 세	0	1,438	2,101	2,619	2,799
사 회 보 험	25,570	47,631	62,733	71,927	79,563
의 료 보 험	8,100	14,550	19,500	22,500	24,000
고 용 보 험	1,870	3,381	4,533	5,327	5,763
국 민 연 금	15,600	29,700	38,700	44,100	49,800

IV. 要約 및 結論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개선사항, 연령별 생계비의 추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1. 본 연구의 개선사항

본 연구는 생계비 산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연구(정인수(1996), 유경준(1997, 1998))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한다. 산출시점의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기관들, 예컨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생계비 산출시점은 10월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연구에서 생계비 산출시점은 식료품비는 12월, 식료품 이외의 비목은 전년도 4/4분기~금년도 3/4분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생계비 산출시점이 비목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생계비와 산출시점이 상이하여 생계비의 직접적인 비교도 용이하지 않다. ②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식료품 이외 비목의 생계비 산출시점과 생계비 환산승수 추정기간이 동일하다면,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생계비를 산출할 필요성이 약화된다.

둘째,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환산승수를 지난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하게 되면, 가구규모별 생계비 격차의 매년 변화가 환산승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비소비지출은 1988년 8월 12일 개최된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편한다. ① 기존의 연구에서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던 ‘오물세’를 생계비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오물세’가 소비지출 중 가구·집기 비목의 ‘쓰레기봉투료’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조세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한다.

넷째,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를 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의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자료상의 제약으로 민간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1998년 3월 이후 품목별 소비자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끝으로,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함에 따라 식료품 이외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도 식료품비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일수, 즉 365/12로 조정하여 산출한다.

2. 연령별 생계비 추계(18세)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전문위원회에 제출되는 생계비 자료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은 18세로 가정되어 있다.³⁷⁾ 그런데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는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이나 혼인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최저임금심의 위한 생계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미혼이라는 인적 속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1인가구의 비목별 생계비는 「도시가계조사」에서 1인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가구의 인적 속성(예컨대, 연령이나 결혼여부 등)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인 이상 가구는 1인가구에 비하여 연령이 현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³⁸⁾ 2인 이상 가구는 거의 대부분 부

37)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58) 참조.

38) 참고로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2인가구 28.8세, 3인가구 30.6세, 4인가구 32.8세.

부와 자녀로 구성된 기혼가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산출하고자 하는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와 일정한 격차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속성의 차이를 통제한 다음에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소비지출액을 설명하는 변수로 가구원수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결혼여부와 같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추가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자료상의 제약으로 이 방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령에 대한 자료는 가용하지만 결혼유무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차선책으로 일반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이고 결혼여부도 연령과 더불어 변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추정한다. 우선 18~24세 최빈값 계층 소비지출 평균값의 전체 최빈값 계층의 소비지출 평균값에 대한 비중은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0.8로 산출된다. 다음으로 <표 III-10>의 1인가구 소비지출 비목별 생계비에 0.8을 곱하여³⁹⁾ 18세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 비목별 생계비를 산출하고, 비소비지출은 산출된 소비지출 생계비를 관계법령에 따른 실제 부담액으로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1999년 최저임금심의 위한 생계비」는 <표 IV-1>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로 419,977원을 제시한다. 이는 전년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 393,993원에 비하여 6.6% 증가한 수치이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 증가율(5.4%)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35.8%)이 더욱 높다.

5인가구 40.7세로 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b: 58) 참조.

39) 한국노총은 식료품비에 대한 연령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지출액의 연령별 격차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료품비만 연령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식료품비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만약 18세 단신근로자의 식료품 생계비가 높다면 다른 비목의 생계비는 소득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

〈표 IV-1〉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1998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398,831	498,539	901,493	1,208,865	1,420,652	1,536,856
식 료 품	135,197	168,996	308,502	418,518	499,045	550,082
주 거	108,664	135,830	237,679	305,547	339,434	339,340
광열수도	13,984	17,479	31,633	42,461	49,962	54,138
가구집기	6,438	8,048	14,764	20,147	24,198	26,917
피복신발	15,136	18,920	34,405	46,455	55,070	60,250
보건의료	10,433	13,041	23,616	31,727	37,373	40,553
교육교양	9,167	11,459	28,587	51,383	79,848	113,982
교통통신	41,576	51,969	92,846	122,629	141,320	148,918
기타소비	58,237	72,796	129,462	169,997	194,402	202,676
비소비지출	21,146	25,570	63,445	85,846	100,736	110,351
조 세	0	0	15,814	23,113	28,809	30,788
소득세	0	0	14,376	21,012	26,190	27,989
주민세	0	0	1,438	2,101	2,619	2,799
사회보험	21,146	25,570	47,631	62,733	71,927	79,563
의료보험	6,450	8,100	14,550	19,500	22,500	24,000
고용보험	1,496	1,870	3,381	4,533	5,327	5,763
국민연금	13,200	15,600	29,700	38,700	44,100	49,800
생 계 비	419,977	524,108	964,938	1,294,711	1,521,388	1,647,207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의 산출에 있다. 그러나 향후 생계비 산출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생계비의 산출과정에서 원시자료(raw data)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이상치 제거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도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지만,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는데 표준편차가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인가구 비목별 평균 지출액이나 회귀계수도 이상치에 영향을 크게 받아 환산승수가 불안정

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의 적합도(fitness)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비지출액 상하 1% 표본을 이상치로 간주하여 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물량방식을 따르고 있는 현행 식료품비 산출방식의 존속여부를 영양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식료품 지출액이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명되더라도 지난 1995년에 작성된 식단은 지출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서 소비자가격 조사가 보다 쉬운 품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빈값 계층의 원시자료를 가구규모별 조정계수로 조정하고 있는데, 조정계수를 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가구규모별 조정계수 때문에 표준생계비가 최저생계비로 강등되어 있다. 따라서 최빈값 계층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출하고 표준생계비의 80%를 최저생계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18세 단신근로자 생계비 추정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축액을 생계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비 평가액을 기존 연구와 같이 계속 생계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동시에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1인가구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기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면 1인가구의 생계비는 「가구조사실태조사」의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액에 기초하여 소비자물가 및 소비수준의 변동을 감안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40) 실제로 생계비 환산승수의 불안정성은 분석기간보다는 이상치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參 考 文 獻

- 강순희(1995), 『1995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KLI.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실무편람』, 각년도.
국세청,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각년도.
김재주·이재창·김용구(1995), 『수리경제학개론』, 제2판, 경문사.
박영범(1990),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KLI.
박영범·조우현(1989),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KLI.
배무기(1998), 『노동경제학』, 개정 제3판, 경문사.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업무편람』, 각년도.
유경준(1997),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_____ (1998),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장현준(1987),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KDI.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각년도.
정인수(1996), 『1996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KLI.
조우현(1990),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 가지 문제점』, 『경제학연구』, 제38집, 제1호.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88a), 『1989년도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_____ (1988b), 『근로자표준생계비보고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결과보고서』, 각년도.
_____,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통계청(1993), 『1991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_____ (1998),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_____,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_____, 『물가조사』, 각년도.

_____,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각호.

한국공업표준협회(1990), 『생계비와 임금』,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시근로자 생계비』, 각년도.

勞務行政研究所(1987), 『賃金と生計費資料』, 勞務行政研究所.

_____(1996), 『賃金と生計費資料』, 勞務行政研究所.

Ehrenberg, R. G. & Smith, R. S.(1994), *Modern Labor Economics*, 5th ed., Harper Collins.

Mood, A. M., Graybill, F. A. & Boes, D. C.(1974),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3th ed., McGraw-Hill.

附 表

〈附表 1〉 參考資料

〈附表 2〉 1998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附表 3〉 1997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부표 1-2〉 의료보험(직장) 보험료

(단위 : 원)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
1	74,999까지	70,000	1,050	46	1,125,000 ~ 1,194,999	1,160,000	17,400
2	75,000 ~ 84,999	80,000	1,200	47	1,195,000 ~ 1,264,999	1,230,000	18,450
3	85,000 ~ 94,999	90,000	1,350	48	1,265,000 ~ 1,349,999	1,300,000	19,500
4	95,000 ~ 104,999	100,000	1,500	49	1,350,000 ~ 1,449,999	1,400,000	21,000
5	105,000 ~ 114,999	110,000	1,650	50	1,450,000 ~ 1,549,999	1,500,000	22,500
6	115,000 ~ 124,999	120,000	1,800	51	1,550,000 ~ 1,699,999	1,600,000	24,000
7	125,000 ~ 134,999	130,000	1,950	52	1,700,000 ~ 1,899,999	1,800,000	27,000
8	135,000 ~ 144,999	140,000	2,100	53	1,900,000 ~ 1,949,999	1,900,000	28,500
9	145,000 ~ 154,999	150,000	2,250	53-1	1,950,000 ~ 2,049,999	2,000,000	30,000
10	155,000 ~ 164,999	160,000	2,400	2	2,050,000 ~ 2,149,999	2,100,000	31,500
11	165,000 ~ 174,999	170,000	2,550	3	2,150,000 ~ 2,249,999	2,200,000	33,000
12	175,000 ~ 184,999	180,000	2,700	4	2,250,000 ~ 2,349,999	2,300,000	34,500
13	185,000 ~ 194,999	190,000	2,850	5	2,350,000 ~ 2,449,999	2,400,000	36,000
14	195,000 ~ 204,999	200,000	3,000	6	2,450,000 ~ 2,549,999	2,500,000	37,500
15	205,000 ~ 214,999	210,000	3,150	7	2,550,000 ~ 2,649,999	2,600,000	39,000
16	215,000 ~ 224,999	220,000	3,300	8	2,650,000 ~ 2,749,999	2,700,000	40,500
17	225,000 ~ 234,999	230,000	3,450	9	2,750,000 ~ 2,849,999	2,800,000	42,000
18	235,000 ~ 244,999	240,000	3,600	10	2,850,000 ~ 2,949,999	2,900,000	43,500
19	245,000 ~ 259,999	250,000	3,750	11	2,950,000 ~ 3,049,999	3,000,000	45,000
20	260,000 ~ 279,999	270,000	4,050	12	3,050,000 ~ 3,149,999	3,100,000	46,500
21	280,000 ~ 299,999	290,000	4,350	13	3,150,000 ~ 3,249,999	3,200,000	48,000
22	300,000 ~ 319,999	310,000	4,650	14	3,250,000 ~ 3,349,999	3,300,000	49,500
23	320,000 ~ 339,999	330,000	4,950	15	3,350,000 ~ 3,449,999	3,400,000	51,000
24	340,000 ~ 359,999	350,000	5,250	16	3,450,000 ~ 3,549,999	3,500,000	52,500
25	360,000 ~ 379,999	370,000	5,550	17	3,550,000 ~ 3,649,999	3,600,000	54,000
26	380,000 ~ 399,999	390,000	5,850	18	3,650,000 ~ 3,749,999	3,700,000	55,500
27	400,000 ~ 419,999	410,000	6,150	19	3,750,000 ~ 3,849,999	3,800,000	57,000
28	420,000 ~ 439,999	430,000	6,450	20	3,850,000 ~ 3,949,999	3,900,000	58,500
29	440,000 ~ 464,999	450,000	6,750	21	3,950,000 ~ 4,049,999	4,000,000	60,000
30	465,000 ~ 494,999	480,000	7,200	22	4,050,000 ~ 4,149,999	4,100,000	61,500
31	495,000 ~ 524,999	510,000	7,650	23	4,150,000 ~ 4,249,999	4,200,000	63,000
32	525,000 ~ 554,999	540,000	8,100	24	4,250,000 ~ 4,349,999	4,300,000	64,500
33	555,000 ~ 584,999	570,000	8,550	25	4,350,000 ~ 4,449,999	4,400,000	66,000
34	585,000 ~ 614,999	600,000	9,000	26	4,450,000 ~ 4,549,999	4,500,000	67,500
35	615,000 ~ 644,999	630,000	9,450	27	4,550,000 ~ 4,649,999	4,600,000	69,000
36	645,000 ~ 674,999	660,000	9,900	28	4,650,000 ~ 4,749,999	4,700,000	70,500
37	675,000 ~ 704,999	690,000	10,350	29	4,750,000 ~ 4,849,999	4,800,000	72,000
38	705,000 ~ 734,999	720,000	10,800	30	4,850,000 ~ 4,949,999	4,900,000	73,500
39	735,000 ~ 794,999	770,000	11,550	31	4,950,000 ~ 5,049,999	5,000,000	75,000
40	795,000 ~ 844,999	820,000	12,300	32	5,050,000 ~ 5,149,999	5,100,000	76,500
41	845,000 ~ 894,999	870,000	13,050	33	5,150,000 ~ 5,249,999	5,200,000	78,000
42	895,000 ~ 944,999	920,000	13,800	34	5,250,000 ~ 5,349,999	5,300,000	79,500
43	945,000 ~ 994,999	970,000	14,550	35	5,350,000 ~ 5,449,999	5,400,000	81,000
44	995,000 ~ 1,054,999	1,020,000	15,300	위 보험료율은 1.5% 기준이므로 각 조합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음.			
45	1,055,000 ~ 1,124,999	1,090,000	16,350				

〈부표 1-3〉 국민연금 보험료

(단위 : 원)

등급	보수월액 (이상~미만)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97년 이전)	보험료 (98년 이후)
1	~ 225,000	220,000	4,400	6,600
2	225,000 ~ 235,000	230,000	4,600	6,900
3	235,000 ~ 245,000	240,000	4,800	7,200
4	245,000 ~ 255,000	250,000	5,000	7,500
5	255,000 ~ 265,000	260,000	5,200	7,800
6	265,000 ~ 280,000	270,000	5,400	8,100
7	280,000 ~ 300,000	290,000	5,800	8,700
8	300,000 ~ 325,000	310,000	6,200	9,300
9	325,000 ~ 355,000	340,000	6,800	10,200
10	355,000 ~ 385,000	370,000	7,400	11,100
11	385,000 ~ 420,000	400,000	8,000	12,000
12	420,000 ~ 460,000	440,000	8,800	13,200
13	460,000 ~ 500,000	480,000	9,600	14,400
14	500,000 ~ 545,000	520,000	10,400	15,600
15	545,000 ~ 595,000	570,000	11,400	17,100
16	595,000 ~ 645,000	620,000	12,400	18,600
17	645,000 ~ 700,000	670,000	13,400	20,100
18	700,000 ~ 760,000	730,000	14,600	21,900
19	760,000 ~ 820,000	790,000	15,800	23,700
20	820,000 ~ 885,000	850,000	17,000	25,500
21	885,000 ~ 955,000	920,000	18,400	27,600
22	955,000 ~1,025,000	990,000	19,800	29,700
23	1,025,000 ~1,095,000	1,060,000	21,200	31,800
24	1,095,000 ~1,170,000	1,130,000	22,600	33,900
25	1,170,000 ~1,250,000	1,210,000	24,200	36,300
26	1,250,000 ~1,335,000	1,290,000	25,800	38,700
27	1,335,000 ~1,425,000	1,380,000	27,600	41,400
28	1,425,000 ~1,515,000	1,470,000	29,400	44,100
29	1,515,000 ~1,610,000	1,560,000	31,200	46,800
30	1,610,000 ~1,710,000	1,660,000	33,200	49,800
31	1,710,000 ~1,810,000	1,760,000	35,200	52,800
32	1,810,000 ~1,915,000	1,860,000	37,200	55,800
33	1,915,000 ~2,030,000	1,970,000	39,400	59,100
34	2,030,000 ~2,135,000	2,080,000	41,600	62,400
35	2,135,000 ~2,245,000	2,190,000	43,800	65,700
36	2,245,000 ~2,360,000	2,300,000	46,000	69,000
37	2,360,000 ~2,475,000	2,420,000	48,400	72,600
38	2,475,000 ~2,600,000	2,540,000	50,800	76,200
39	2,600,000 ~2,730,000	2,670,000	53,400	80,100
40	2,730,000 ~2,870,000	2,800,000	56,000	84,000
41	2,870,000 ~3,010,000	2,940,000	58,800	88,200
42	3,010,000 ~3,150,000	3,080,000	61,600	92,400
43	3,150,000 ~3,310,000	3,230,000	64,600	96,900
44	3,310,000 ~3,450,000	3,380,000	67,600	101,400
45	3,450,000 이상	3,600,000	72,000	108,000

〈附表 2〉 1998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부표 2-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1996년 4/4분기~1997년 3/4분기)

(단위 :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1,024,002	1,207,127	1,452,154	1,678,365	1,592,734
식료품	290,628	351,350	417,572	462,296	485,019
순주거	47,206	50,467	45,586	42,263	50,779
광열수도	47,147	55,104	64,639	75,265	98,364
가구집기	46,221	58,660	61,463	70,646	39,083
피복신발	65,470	86,960	99,159	111,215	98,593
보건의료	55,981	60,665	66,243	77,727	94,604
교육교양	82,035	153,285	274,643	366,328	258,270
교통통신	147,587	147,828	174,422	178,794	201,694
기타소비	241,728	242,808	248,426	293,831	266,330
총소비지출	1,342,954	1,543,351	1,857,322	2,146,935	2,057,631
총주거	366,158	386,692	450,754	510,833	515,677

주 :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부표 2-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1996년 4/4분기~1997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 가구(A)	최빈값 계층 가구(B)	비율(=B/A)
2인가구	1,342,954	961,352	0.7159
3인가구	1,543,351	1,092,964	0.7082
4인가구	1,857,322	1,349,813	0.7268
5인가구	2,146,935	1,556,978	0.7252
6인가구	2,057,631	1,327,856	0.6453

〈부표 2-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6년 4/4분기~1997년 3/4분기)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1,252	129,345	0.8779
주거	-16,527	150,183	0.7993
광열수도	-1,627	21,198	0.6278
가구집기	-970	11,788	0.2156
피복신발	-2,160	24,549	0.4180
보건의료	-1,455	17,594	0.2432
교육교양	5,318	12,505	0.5192
교통통신	-4,743	44,337	0.6034
기타소비	-7,474	75,386	0.6781

〈부표 2-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1996년 4/4분기~1997년 3/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18,093	213,683	286,769	337,351	365,430
주거	133,655	234,256	301,802	336,293	337,729
광열수도	19,571	35,889	48,952	58,762	65,318
가구집기	10,819	19,698	26,637	31,638	34,699
피복신발	22,390	40,461	54,213	63,646	68,760
보건의료	16,139	29,368	39,685	47,092	51,589
교육교양	17,824	46,285	85,382	135,117	195,489
교통통신	39,593	69,700	90,320	101,454	103,102
기타소비	67,912	120,877	158,893	181,962	190,084

〈부표 2-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1996년 4/4분기~1997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0.283	0.512	0.687	0.808	0.875
주거	0.297	0.520	0.670	0.746	0.749
광열수도	0.303	0.555	0.757	0.909	1.010
가구집기	0.176	0.320	0.433	0.515	0.565
피복신발	0.226	0.408	0.547	0.642	0.693
보건의료	0.244	0.443	0.599	0.711	0.779
교육교양	0.065	0.169	0.311	0.492	0.712
교통통신	0.227	0.400	0.518	0.582	0.591
기타소비	0.273	0.487	0.640	0.732	0.765

〈부표 2-6〉 1인가구 순식료품비(1997년 10월)

(단위 : 원)

	품 목	소비자가격		품 목	소비자가격
곡 류	쌀	580.6	채소·해초	표고버섯	9.1
	보리쌀	6.8		양송이버섯	6.4
	콩	31.5		느타리버섯	18.4
	팥	4.1		풋고추	32.8
	현미	11.1		김	67.0
	밀가루	2.4		미역	65.9
육 류	쇠고기	303.9	다시마	1.5	
	돼지고기	230.3	배추김치	360.3	
	닭고기	35.8	깍두기	101.3	
	내장등(곱창)	11.5			
유 란	햄	38.8	과 실	사과	114.7
	달걀	48.7		배	20.6
	두부	51.5		감	23.2
어 개 류	우유	240.2		포도	27.9
	조기	199.0		복숭아	35.9
	명태	81.3		밀감	124.6
	고등어	65.5	수박	100.4	
	갈치	114.3	참외	19.8	
	냉동오징어	54.0	유 지·조 미 료	참기름	13.6
	마른멸치	130.8		콩기름	35.6
	참치통조림	31.5		옥수수기름	4.1
게맛살	66.6	설탕		4.4	
채소·해초	무	19.3		마늘	53.3
	열무	36.6		소금	1.6
	배추	9.9		참깨	44.7
	양배추	4.0		밤	8.7
	파	21.5	고추장	29.0	
	양파	28.7	간장	11.3	
	시금치	43.0	된장	20.0	
	콩나물	32.0	빵 및 과자	식빵	47.1
	상추	15.5		국수	28.4
	당근	19.2		라면	27.8
	오이	17.4		땅콩	9.5
	호박	12.7		콜라	66.4
	감자	44.6		유산균발효유	49.3
	고구마	22.9		아이스크림	18.6
		전 체(2,164 kcal 기준)		4264.0	

주 : 〈표 III-6〉의 소비자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부표 2-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7년 10월)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료품	-15,373	170,276	0.7974
주거	-18,958	198,434	0.6334
광열수도	-1,798	22,768	0.5813
가구집기	-2,070	22,440	0.0508
피복신발	-2,438	35,234	0.3639
보건의료	-4,701	38,959	0.1295
교육교양	7,529	20,764	0.3185
교통통신	-12,297	88,251	0.1307
기타소비	-22,950	156,240	0.3441

〈부표 2-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1997년 10월)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추정치 (Y4)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A)	4인가구 평균값 환산치(Y×Y4÷YA)
식료품	385,220	435,138	405,311	413,568
주거	437,848	490,416	459,834	466,968
광열수도	55,971	62,304	57,284	60,876
가구집기	51,110	56,646	52,891	54,740
피복신발	88,502	101,920	92,773	97,228
보건의료	73,652	80,615	78,535	75,602
교육교양	163,229	203,523	162,201	204,812
교통통신	145,664	156,261	158,150	143,924
기타소비	244,276	257,761	265,835	236,857

〈부표 2-9〉 비목별 ·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1997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료품	155,402	281,191	377,366	443,929	480,878
주거	138,463	242,682	312,658	348,389	349,877
광열수도	18,432	33,799	46,102	55,341	61,515
가구집기	9,635	17,543	23,723	28,177	30,903
피복신발	21,954	39,673	53,157	62,407	67,421
보건의료	18,419	33,517	45,292	53,746	58,877
교육교양	13,292	34,516	63,673	100,762	145,784
교통통신	32,670	57,513	74,528	83,715	85,074
기타소비	64,750	115,248	151,494	173,489	181,232

〈부표 2-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1997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473,017	855,682	1,147,994	1,349,954	1,461,561
비소비지출	19,824	49,930	68,352	81,413	88,372
조 세	0	14,522	21,397	25,951	27,692
소 득 세	0	13,201	19,452	23,591	25,174
주 민 세	0	1,320	1,945	2,359	2,517
사 회 보 험	19,824	35,409	46,955	55,462	60,681
의료보험	7,650	13,800	18,450	21,000	24,000
고용보험	1,774	3,209	4,305	5,062	5,481
국민연금	10,400	18,400	24,200	29,400	31,200

〈부표 2-11〉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1997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378,414	473,017	855,682	1,147,994	1,349,954	1,461,561
식 료 품	124,322	155,402	281,191	377,366	443,929	480,878
주 거	110,770	138,463	242,682	312,658	348,389	349,877
광 열 수 도	14,745	18,432	33,799	46,102	55,341	61,515
가 구 집 기	7,708	9,635	17,543	23,723	28,177	30,903
피 복 신 발	17,563	21,954	39,673	53,157	62,407	67,421
보 건 의 료	14,735	18,419	33,517	45,292	53,746	58,877
교 육 교 양	10,634	13,292	34,516	63,673	100,762	145,784
교 통 통 신	26,136	32,670	57,513	74,528	83,715	85,074
기 타 소 비	51,800	64,750	115,248	151,494	173,489	181,232
비소비지출	15,569	19,824	49,930	68,352	81,413	88,372
조 세	0	0	14,522	21,397	25,951	27,692
소 득 세	0	0	13,201	19,452	23,591	25,174
주 민 세	0	0	1,320	1,945	2,359	2,517
사 회 보 험	15,569	19,824	35,409	46,955	55,462	60,681
의료보험	6,150	7,650	13,800	18,450	21,000	24,000
고용보험	1,419	1,774	3,209	4,305	5,062	5,481
국민연금	8,000	10,400	18,400	24,200	29,400	31,200
생 계 비	393,983	492,841	905,612	1,216,346	1,431,367	1,549,934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

〈附表 3〉 1997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부표 3-1〉 비목별·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1995년 4/4분기~1996년 3/4분기)

(단위 : 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소비지출	1,009,272	1,134,541	1,404,543	1,493,607	1,460,361
식료품	278,400	321,959	391,910	428,441	486,561
순주거	44,944	51,286	55,893	44,145	24,507
광열수도	41,690	49,839	57,434	70,172	82,415
가구집기	46,093	67,635	64,187	62,456	30,434
피복신발	79,922	82,480	103,387	96,825	87,911
보건의료	58,654	55,689	64,816	77,773	57,272
교육교양	73,267	135,630	251,526	310,771	267,359
교통통신	150,070	138,566	167,061	144,288	165,356
기타소비	236,231	231,458	248,329	258,734	258,547
총소비지출	1,282,048	1,432,022	1,780,328	1,899,779	2,010,028
총주거	317,720	348,767	431,679	450,317	574,173

- 주 : 1) 순주거비 및 순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총주거비 및 총소비지출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

〈부표 3-2〉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평균값 비교(1995년 4/4분기~1996년 3/4분기)

(단위 : 원, %)

	전체 가구(A)	최빈값 계층 가구(B)	비율(=B/A)
2인가구	1,282,048	915,703	0.7143
3인가구	1,432,022	1,032,069	0.7207
4인가구	1,780,328	1,241,848	0.6975
5인가구	1,899,779	1,289,427	0.6787
6인가구	2,010,028	1,253,611	0.6237

〈부표 3-3〉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5년 4/4분기~1996년 3/4분기)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 료 품	-8,637	111,148	0.8695
주 거	-13,893	130,877	0.7866
광열수도	-1,017	16,965	0.6510
가구집기	-1,379	12,816	0.2202
피복신발	-2,612	26,100	0.4129
보건의료	-2,094	19,530	0.2436
교육교양	4,744	10,470	0.4938
교통통신	-3,708	35,398	0.5554
기타소비	-7,838	73,259	0.6494

〈부표 3-4〉 비목별·가구규모별 최빈값 추정치(1995년 4/4분기~1996년 3/4분기)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 료 품	102,511	187,748	255,711	306,401	339,817
주 거	116,985	206,185	267,599	301,229	307,074
광열수도	15,948	29,862	41,743	51,589	59,401
가구집기	11,437	20,116	26,036	29,198	29,602
피복신발	23,488	41,753	54,794	62,612	65,207
보건의료	17,436	30,685	39,746	44,620	45,307
교육교양	15,214	39,916	74,107	117,786	170,954
교통통신	31,690	55,964	72,822	82,263	84,288
기타소비	65,420	115,164	149,232	167,623	170,337

〈부표 3-5〉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1995년 4/4분기~1996년 3/4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 료 품	0.262	0.479	0.652	0.782	0.867
주 거	0.271	0.478	0.620	0.698	0.711
광열수도	0.278	0.520	0.727	0.898	1.034
가구집기	0.178	0.313	0.406	0.455	0.461
피복신발	0.227	0.404	0.530	0.606	0.631
보건의료	0.269	0.473	0.613	0.688	0.699
교육교양	0.060	0.159	0.295	0.468	0.680
교통통신	0.190	0.335	0.436	0.492	0.505
기타소비	0.263	0.464	0.601	0.675	0.686

〈부표 3-6〉 1인가구 순식료품비(1996년 10월)

(단위 : 원)

	품 목	소비자가격		품 목	소비자가격
곡 류	쌀	552.0	채소·해초	표고버섯	8.5
	보리쌀	6.0		양송이버섯	5.9
	콩	36.4		느타리버섯	17.1
	팥	4.5		풋고추	26.3
	현미	10.6		김	64.6
	밀가루	2.3		미역	65.8
육 류	쇠고기	323.2	다시마	1.5	
	돼지고기	212.4	배추김치	311.7	
	닭고기	30.0	깍두기	87.7	
	내장등(곱창)	10.6	과 실	사과	89.4
	햄	35.7		배	20.3
유 란	달걀	46.6		감	27.8
	두부	48.5		포도	21.3
	우유	240.0		복숭아	31.9
어 개 류	조기	175.9	밀감	75.0	
	명태	70.8	수박	92.0	
	고등어	50.0	참외	20.6	
	갈치	85.7	유 지· 조 미 료	참기름	13.7
	냉동오징어	72.6		콩기름	32.6
	마른멸치	139.8		옥수수기름	3.8
	참치통조림	31.2		설탕	4.1
	게맛살	67.0		마늘	40.4
채소·해초	무	22.8		소금	1.5
	열무	32.5		참깨	39.7
	배추	10.5		밤	9.1
	양배추	3.3	고추장	27.9	
	파	18.7	간장	9.5	
	양파	30.0	된장	19.4	
	시금치	39.8	빵 및 과자	식빵	45.4
	콩나물	30.8		국수	28.0
	상추	12.4		라면	26.0
	당근	21.0		땅콩	8.9
	오이	13.3		콜라	62.1
	호박	9.2		유산균발효유	49.3
	감자	45.5		아이스크림	18.7
	고구마	22.4		전체(2,164kcal 기준)	3,965.7

주 : 〈표 III-6〉의 소비자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부표 3-7〉 비목별 회귀방정식 추정결과(1996년 10월)

	가구원수 ²	가구원수	결정계수
식 료 품	-14,332	160,562	0.6814
주 거	-18,758	185,226	0.6068
광열수도	-2,237	23,586	0.5756
가구집기	-8,847	54,945	0.0462
피복신발	-8,255	62,680	0.1787
보건의료	570	19,425	0.1673
교육교양	4,015	31,462	0.3473
교통통신	-11,462	82,460	0.0873
기타소비	-28,380	183,306	0.1134

〈부표 3-8〉 4인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평균값 환산치(1996년 10월)

(단위 : 원)

	전체 가구 평균값(Y)	4인가구 추정치 (Y ₄)	평균가구원수 가구 추정치(Y _A)	4인가구 평균값 환산치(Y×Y ₄ ÷Y _A)
식 료 품	366,741	412,928	386,356	391,964
주 거	397,221	440,780	418,475	418,393
광열수도	52,984	58,552	55,143	56,259
가구집기	74,483	78,222	83,931	69,416
피복신발	109,377	118,644	118,257	109,735
보건의료	74,406	86,820	74,955	86,184
교육교양	156,412	190,095	159,269	186,685
교통통신	137,343	146,453	148,203	135,721
기타소비	268,177	279,146	293,927	254,691

〈부표 3-9〉 비목별 ·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생계비(1996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 료 품	144,530	264,706	360,527	431,995	479,108
주 거	113,384	199,839	259,364	291,958	297,623
광열수도	15,622	29,251	40,888	50,533	58,186
가구집기	12,369	21,755	28,158	31,577	32,014
피복신발	24,930	44,316	58,159	66,457	69,211
보건의료	23,184	40,800	52,849	59,330	60,243
교육교양	11,292	29,626	55,003	87,422	126,883
교통통신	25,745	45,466	59,161	66,831	68,476
기타소비	67,096	118,115	153,055	171,917	174,701

〈부표 3-10〉 가구규모별 비소비지출 생계비(1996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438,153	793,874	1,067,163	1,258,020	1,366,445
비소비지출	18,443	48,965	64,899	75,339	81,619
조 세	0	16,688	20,897	23,521	24,595
소 득 세	0	15,171	18,997	21,383	22,359
주 민 세	0	1,517	1,900	2,138	2,236
사 회 보 험	18,443	32,277	44,002	51,818	57,024
의료보험	7,200	12,300	17,400	19,500	22,500
고용보험	1,643	2,977	4,002	4,718	5,124
국민연금	9,600	17,000	22,600	27,600	29,400

〈부표 3-11〉 1997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1996년 10월)

(단위 : 원)

	1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비 지 출	350,523	438,153	793,874	1,067,163	1,258,020	1,366,445
식 료 품	115,624	144,530	264,706	360,527	431,995	479,108
주 거	90,708	113,384	199,839	259,364	291,958	297,623
광 열 수 도	12,497	15,622	29,251	40,888	50,533	58,186
가 구 집 기	9,895	12,369	21,755	28,158	31,577	32,014
피 복 신 발	19,944	24,930	44,316	58,159	66,457	69,211
보 건 의 료	18,547	23,184	40,800	52,849	59,330	60,243
교 육 교 양	9,034	11,292	29,626	55,003	87,422	126,883
교 통 통 신	20,596	25,745	45,466	59,161	66,831	68,476
기 타 소 비	53,677	67,096	118,115	153,055	171,917	174,701
비소비지출	14,264	18,443	48,965	64,899	75,339	81,619
조 세	0	0	16,688	20,897	23,521	24,595
소 득 세	0	0	15,171	18,997	21,383	22,359
주 민 세	0	0	1,517	1,900	2,138	2,236
사 회 보 험	14,264	18,443	32,277	44,002	51,818	57,024
의료보험	5,550	7,200	12,300	17,400	19,500	22,500
고용보험	1,314	1,643	2,977	4,002	4,718	5,124
국민연금	7,400	9,600	17,000	22,600	27,600	29,400
생 계 비	364,787	456,596	842,839	1,132,062	1,333,359	1,448,064

주 : *는 18~24세 소비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율인 0.8로서 조정하여 추정함.

- 鄭進浩
 - 서울대 경제학 박사
 - 現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1999년 6월 25일 인쇄
1999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烜 求

발행처

주 소 1510-01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Fax. (02) 786-1862

인 쇄 成紋印刷社
(代) (02) 2272-7553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4,000원